

www.kunsan.ac.kr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기관 (2020.3월~2022.2월)  
IEQAS University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arch 2020 ~ Feb. 2022)

2022

# 군산 대학교

## 2022학년도 재외국민 학부과정 신·편입학 모집요강

2021.6

KUNSAN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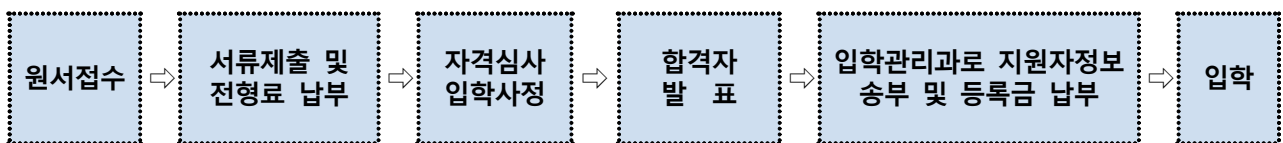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 I 전형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2021.07.05.(월)~ 2021.07.09(금)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b>※ 지원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대학 이상 초과하여 지원불가</b> 1. 서류제출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3층 행정실 (우)54150 <b>※ 지원자/대리인 직접 제출 또는 우편송부 (우편송부의 경우 접수 마지막날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b> 2. 전형료 납부 : 50,000원 계좌송금 (전북은행 567-13-0303677 군산대학교) <b>※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이체해야 확인 가능함</b>
자 격 심 사	2021.07.12.(월)~ 2021.07.16(금)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 등을 참고하여 지원학과에서 선발함
합격자 발표	2021.07.23.(금)	국제교류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금 납부	2022.2월초	전북은행, 국민은행 각 지점. 추후 홈페이지 공고 <b>※ 본교 입학관리과에서 지원자에게 추가 안내 예정</b>

## II 입학 절차



## III 지원 자격

###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 □ 기본 학력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자격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p>■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해외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li> </ul>								
해외 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li> </ul>								
해외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li> </ul> </li> <li>○ <b>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ul> </li> </ul>								
해외 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li> </ul> </li> <li>○ <b>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li> </ul> </li> <li>○ <b>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재학기간</td> <td>·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체류기간</td> <td>·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외근무자 재직기간</td> <td>·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기존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등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 가능함

## 2.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구 분	지 원 자 격													
<b>전 교육과정 이수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li> <li>-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에도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li> <li>- 해외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학년제</th> <th style="width: 55%;">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학년 이하</td> <td>미인정</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학년제</td> <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학년제</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학년 이상</td> <td>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 <td></td> </tr> </tbody> </table>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li> <li>▶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li> <li>▶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li> <li>※ 입학허용기간 :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li> <li>※ 유아원, 유치원,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는 불인정함</li> </ul>														
<b>북한이탈주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li> <li>-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li> <li>-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국내 검정고시 인정)</li> <li>※ 입학허용기간 :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 아래 어학능력을 보유한 자</li> <li>-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인정하는 KSNU TOPIK 4급 이상을 수료한 자</li> <li>※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자격요건은 위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요건과 동일함</li> </ul>													

### 3. 자격요건 주의사항

- 영주교포 자녀
  - 부모 및 지원자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어야 함(주민등록 이민말소 완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경우 대사관과 영사관의 확인으로 인정
- 해외 파견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 파견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미인정)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학교 소재지 및 인정 기준
  - 외국학교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학교)이어야 함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 재학기간 인정 기준
  - 재학기간 : 외국의 고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에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
  - 기간산정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지 못했다면 고교과정 1년 이상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인정
  - 외국소재 유학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수학기간으로 미인정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12년 기간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함(대학과정을 고교과정으로 인정)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과정에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미인정
  - 학제가 다른 국가로 신·편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국내수학기간과 외국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
  - 해외파견근무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 현지법인, 자영업자, 해외취업자는 외국근무기간(재직 및 경력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 기간), 교포는 영주기간, 외국유학·연수자는 외국유학·연수기간, 선교사는 해외 파송기간 내에서 자녀들의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인정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수학기간				누락	A	A	A	A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4-2로 G2-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수학기간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거주(체류)기간 산정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거주(체류)기간, 학력,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 유의사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인정하지 아니함.

## IV 모집단위 및 인원

단과대학명	모집단위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인원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	원 제한없는 재외국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	34명	제한없음	
	영어영문학과		○	○			
	미디어문화학과		○	○			
	동아시아학부	일어일문학		○			○
		중어중문학		○			○
	역사철학부	역사		○			○
철학			○	○			
예술대학	미술학과		○	○			
	산업디자인학과		○	○			
	음악과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	○			
사회과학 대학	행정경제학부	행정학	○	○			
		경제학	○	○			
	법학과		○	○			
	경영학과		○	○			
	회계학과		○	○			
	무역학과		○	○			
	사회복지학과		○	○			
국제물류학과		○	○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	○			
	물리학과		○	○			
	화학과		○	○			
	생명과학과		○	○			
	아동가족학과		○	○			
	의류학과		○	○			
	간호학과		○	○			
	체육학과		○	○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	○			
	전기공학과		○	○			
	토목공학과		○	○			
	환경공학과		○	○			
	신소재공학과		○	○			
	화학공학과		○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		○	○		
		정보통신공학		○	○		
	IT정보제어공학부	정보제어공학		○	○		
		IT융합통신공학		○	○		
조선해양공학과		○	○				

단과대학명	모집단위	세부전공	신입학	편입학	인원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	정 원 제한없는 재외국민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학과		○	○			
	해양생명과학과		○	○			
	해양생물자원학과		○	○			
	수산생명의학과		○	○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		○			○
		식품생명공학		○			○
	해양산업운송과학 기술학부	해양생산시스템 마린엔지니어링		○			○
산학융합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자동차공학	○	○			
		기계설계공학					
		기계공학					
	건축·해양건설융합 공학부		○	○			
	공간디자인융합 기술학과		○	○			
	융합기술창업학과		○	○			
소프트웨어학과		○	○				



## V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정원 제한없는 재외국민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교수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자 ·해외취업자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결혼이주민 포함)	북한이탈 주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활동동의서, 수학기간 기록표 (본교 서식)	○	○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초·중·고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	○	○	○	○	-	-
기본증명서(본인)	-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학생)	○ (학생)	-
영주권사본	○ (부모·학생)	-	-	-	-	-	-	-
보호자 재직증명서 (국내본사발행, 해외파견내용 기재) ※해외 발령일 및 귀임발령 (예정)일 기재할 것	-	○	○	○	○	해당자	-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소재국 한국영사관발행)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소재국 지정 정부기관 발행)	○	○	○	○	○	○	○	-
내국인영업허가에 준하는 당해국 발행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	-	-	-	○	-	-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승인)서	-	-	○	-	-	-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서	-	-	-	-	○	-	-	-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	-	-	-	-	-	-	-
해당국발행 사업자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	-	-	-	-	해당자	-	-
포트폴리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과 지원자만 제출 (PDF 및 MP3 또는 MP4파일로 제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군·구청 발행)	-	-	-	-	-	-	-	○
학력인정증명서 (사도 교육청 발급),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	-	-	○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포트폴리오는 컴퓨터 파일로 제출)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편입생의 경우 대학재학(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출신 대학장 추천서 추가 제출

## VI 등록금

계열	한국KRW	해당학과
인문 사회	1,659,000	<b>인문대학:</b>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미디어문화학과, 동아시아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역사철학부(역사전공, 철학전공) <b>사회과학대학:</b> 행정경제학부(행정학전공, 경제학전공), 법학과, 경영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류학과, 국제물류학과
예능 공학	2,119,000	<b>예술대학:</b>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과(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관현악전공) <b>자연과학대학:</b> 식품생명과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b>공과대학:</b>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나노화학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IT정보제어공학부(정보제어공학전공, IT융합통신공학전공), 조선해양공학과 <b>산학융합공과대학:</b>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 기계에너지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융합기술창업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b>해양과학대학:</b> 식품생명과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수학	1,669,000	<b>자연과학대학:</b> 수학과
이학 체육	1,978,000	<b>자연과학대학:</b>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아동가족학과, 의류학과, 간호학과, 식품생명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체육학과 <b>해양과학대학:</b> 해양경찰학과, 해양생명응용과학부(해양생명과학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수산생명의학전공, 해양생명의학전공), 식품생명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 등록금은 본교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VII 장학금

※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이므로 내국인 장학금 대상자임.

※ 내국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과로 문의 (전화: 469-4011~4013)

## VIII 기타 사항

□ 학생생활관 (2021년도 정기 개관 기준)

학기	생활관구분	인실	관리비	식비	합계
1학기	남학생관	2인실	490,100	422,400	912,500
		1인실	735,150		1,157,550
	여학생관 및 BTL생활관	2인실	558,100		980,500
		1인실	837,150		1,259,550
2학기	남학생관	2인실	467,300	406,000	873,300
		1인실	700,950		1,106,950
	여학생관 및 BTL생활관	2인실	532,000		938,000
		1인실	798,000		1,204,000

※[식당 운영제도] 평일의무식 5일(월~금) 3식(조식, 중식, 석식) 운영, 주말의무식은 선택형(\*식사자는 별도 추가 비용 발생)으로 시행하며, 일정 비율 이하로 선택할 경우 주말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함

※“주말의무식[2일(토,일), 2식(중식, 석식)]”을 선택할 경우, 1학기 117,500원, 2학기 109,700원 추가 비용 납부

※1인실은 공실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함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www.kunsan.ac.kr/dormi>

□ 입학관련 문의처

-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3층 행정실
- 연락처 : +82-63-469-4935 (재외국민입학담당자)
- 이메일 : [inter\\_adm@kunsan.ac.kr](mailto:inter_adm@kunsan.ac.kr)

- 붙임
1. 입학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수학기간 기록표 양식 1부